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신축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재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재활원에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5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

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2026.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4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9항에 제2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제8조제20항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제8조제20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8조제20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0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0항제9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및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2항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8항 중 “2026년 3월 25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67”을 “869”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4”를 “29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

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73”을 “7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0”을 “872”로 하고, 일반직 계 “859”를 “861”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4”를 “29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2”를 “83”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6”을 “338”로 하고, 일반직 계 “336”을 “3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25”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총계 “183”을 “185”로 하고, 일반직 계 “183”을 “1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9”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총계 “185”를 “187”로 하고, 일반직 계 “185”를 “1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2”를 “184”로 한다.

별표 3 제4호 중 총계 “117”을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7”을 “120”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5”를 “118”로 한다.

별표 3 제5호 중 총계 “130”을 “132”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8”을 “130”으로 한다.

별표 4 중 약무주사 “1”을 “2”로 하고,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55”을 “357”로 하고, 일반직 계 “355”을 “3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1”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3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2. 제3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3. 제3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4.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5. 제3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6. 제39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7. 제39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의료기술서기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제8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 ~ ⑧ (생 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의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u> <u>호출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u> <u>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⑮ ~ ⑱ (생 략)	⑮ ~ ⑱ (현행과 같음)
⑲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u> <u>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u> <u>관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u> <u>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⑳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8. (생략)

9. (생략)

1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

선에 관한 사항

2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⑳ -----
-----.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1. (현행 제8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u>선에 관한 사항</u> <u>1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u> <u>1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1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1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u> <u>17. · 18. (생략)</u> ⑳ · ㉑ (생략)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⑦ (생략)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⑨ ~ ⑫ (생략)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의2. (생략) <u>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u>	<u><삭제></u> <u>1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삭제></u> <u>12. · 13.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u> ㉑ · ㉒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8. (현행과 같음) <u>9.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1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	--

<u>운영에 관한 사항</u> 2. ~ 30. (생략) ⑭ ~ ⑳ (생략)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④ (생략)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11. · 12.</u> (생략) 14. ~ 22. (생략) ⑥ ~ ⑨ (생략) ⑩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u>활성화</u>에 관한 사항 <u><신설></u> ⑪ (생략) ⑫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	2. ~ 30. (현행과 같음) ⑭ ~ ⑳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u> <u>12. · 13.</u>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4. ~ 22.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9. ----- <u>활성화 및 본인진료기록열람 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u>----- -- <u>10.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의 운 영에 관한 사항</u> ⑪ (현행과 같음) ⑫ -----
---	--

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u>정책심의위원회</u>의 운영 3. ~ 11. (생 략) 제39조(한시정원) ① ~ ⑦ (생 략) ⑧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u>2026년 3월 25일</u>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 1. (현행과 같음) 2. ----- ----- <u>정책위원회</u>----- -- 3. ~ 11. (현행과 같음) 제39조(한시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u>2028년 3월 31일</u>-----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67</u>	• <u>869</u>	+2
일반직 계	• • <u>858</u>	• • <u>860</u>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94</u>	• • <u>295</u>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73</u>	• • <u>74</u>	+1

	.	.	.	
	.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70</u>	• <u>872</u>	+2
•	•	•	
•	•	•	
일반직 계	<u>859</u>	<u>861</u>	+2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 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 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94</u>	<u>295</u>	+1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 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82</u>	<u>83</u>	+1
•	•	•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336</u>		<u>338</u>	+2	
일반직	계		<u>336</u>		<u>338</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3</u>		<u>325</u>	+2	
	.		.		.		
	.		.		.		
총계			<u>183</u>		<u>185</u>	+2	
일반직	계		<u>183</u>		<u>185</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7</u>		<u>179</u>	+2	
	.		.		.		
	.		.		.		
총계			<u>185</u>		<u>187</u>	+2	
일반직	계		<u>185</u>		<u>18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2</u>		<u>184</u>	+2	

	.	.	.	
	.	.	.	
총계	<u>117</u>	<u>120</u>	+3	
일반직 계	<u>117</u>	<u>120</u>	+3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5</u>	<u>118</u>	+3	
	.	.		
	.	.		
총계	<u>130</u>	<u>132</u>	+2	
일반직 계	<u>130</u>	<u>132</u>	+2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8</u>	<u>130</u>	+2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약무주사	•	•	•	+1
	•	•	•	
		<u>1</u>	<u>2</u>	
	•	•	•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	•	•	-1
		<u>2</u>	<u>1</u>	
	•	•	•	
	•	•	•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5</u>	• <u>357</u>	+2
일반직 계	<u>355</u>	<u>35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9</u>	<u>321</u>	+2
•	•	•	